

채권관리규정

제정 1999. 7.31
전부개정 2007. 4.23
전부개정 2016.10.25.
개정 2017.11.27.
개정 2017.12.22.
개정 2018. 7. 9.
개정 2019.11.22.
개정 2020. 4.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채권관리에 필요한 원칙,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란 공사가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채무관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 가. 보증사고로 인한 각종 구상채권
 - 나. 용자규정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한 용자금
 - 다. 공사가 채권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지출한 소송대지급금 등
 - 라.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 마. 지급받지 못한 보증료
 - 바. 그 밖에 공사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채무관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
2. “특수채권”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상각한 채권을 말한다.
3. “채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권행사의 대상인 자를 말한다.
 - 가. 보증채무약정서의 주채무자(용자규정의 차주를 포함한다. 이하 “주채무자”라 한다)
 - 나.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하 “연대보증인”이라 한다)
 - 다. 그 밖에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공사에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
4. “회수실익가액”이란 추정시가에서 선순위채권액과 경합채권의 안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5. “추정시가”란 채무관계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예상되는 처분가액으로 산정방법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6. “집행절차”란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집행법상 담보권실행, 강제집행 등을 말한다.
7. <삭제 2020. 4.24>

제3조(적용범위) 채권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7. 9>

제4조(채권실행원칙) 채무관계자의 재산은 회수가 용이한 순서대로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업부서장은 채권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채권의 이관) ①영업부서장은 채권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본사 소관부서 또는 다른 영업부서로 채권을 이관할 수 있다.
②채권을 이수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 이수관내용을 전산등록 하는 등 이수관 내용을 명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사고의 등록·해제) ①영업부서장은 보증사고(제2조제1호나목의 용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 보증사고발생사유, 보증사고발생일 및 채무내역 등 보증사고 발생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고 소관부서장 및 각 영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증상품(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중 조합사업비대출보증, 용자수탁 제외)사고의 경우 보고 및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8. 7. 9>

②영업부서장은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의 사유가 모두 해소되거나 채무관계자가 원인된 채무를 전액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증사고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증사고 등록·해제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처리) 이 규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는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 제8조(통계관리)** ①보증사고를 등록한 주채무자는 보증사고업체로 관리한다.
②보증사고업체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구상채권업체로 관리한다.
③구상채권업체의 채권전액을 상각한 경우에는 특수채권업체로 관리한다.
④특수채권업체의 채권전액에 대하여 시효연장을 포기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채권으로 관리한다.

- 제9조(법무사의 위촉·운용)** ①공사는 업무 전반에 필요한 법무대리 등을 위해 법무사를 위촉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0. 4.24>
②제1항에 따른 법무사의 위촉,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4.24>

제2장 채권보전 및 집행

제1절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

- 제10조(재산조사)** ①영업부서장은 채무관계자의 담보를 통해 채권의 전액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채무관계자의 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영업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재산조사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채권보전조치)** ①영업부서장은 재산조사결과 채무관계자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실익가액, 환가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채권보전조치에 따른 청구금액은 회수실익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업부서장이 채권회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수실익가액을 초과할 수 있다.
③영업부서장은 채권보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잔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채권보전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보전조치의 시기, 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채권회수자원 확보조치) 영업부서장은 보증채무이행규정 제13조에 따라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사업장(이하 ‘환급이행사업장’이라 한다) 등은 채권회수 예상액, 자금부담액, 처분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채권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의 채권회수자원 확보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채권회수자원 확보조치에 필요한 비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채권보전조치 유보 등) ①영업부서장은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할 수 있다.

②영업부서장은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한 후 주채무자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보전조치의 해제) 영업부서장은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취한 채권보전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사고정상화 유도) 영업부서장은 보증사고를 등록한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외에 사고발생원인, 영업활동의 계속여부, 채무관계자의 동태 및 채무자의 담보능력 등을 조사하여 사고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가능한 한 보증채무이행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채무자회생 관리

제16조(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른 조치) 영업부서장은 채무관계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원인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영업부서장은 채무관계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채권 신고기간 등을 파악하여 회생채권신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회생계획안 동의) ①영업부서장은 주채무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본사에 회생계획안 인가 동의 승인신청을 하고, 소관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채무관계자(보증규정 제2조제6호의 최다주식보유자 및 동조 제7호의 경영실권자와 개인기업은 제외한다)의 회생절차에 대한 제반사항은 영업부서장이 처리할 수 있다.

②영업부서장은 공사가 부동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항고사유와 실익을 검토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안 동의 신청, 검토,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생계획인가업체의 관리) ①회생계획인가결정(중전 회사정리 및 화의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되면 인가조건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되, 인가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 회생계획인가업체(중전 회사정리 및 화의인가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채권보전조치 및 채권회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업체에 대한 채권보전 및 채권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집행절차

제19조(대리인 선임)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 등 집행절차를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원 또는 사내변호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실행전 조사) 영업부서장은 집행절차를 실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1. 채권관계서류
2. 채무관계자의 주소
3. 재산상태와 그 재산의 시가·현황·처분의 용이성
4. 회수실익가액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집행절차 실행의 통지) 영업부서장은 집행절차를 실행할 경우에는 해당 채무관계자에게 채무이행 최고와 동시에 담보권실행 등 제반 집행절차의 실행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물 이외의 일반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상속인에 대한 조치) ①채무관계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재산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절차의 이행을 내용증명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집행절차의 취하) 영업부서장은 집행절차에 착수한 후 세칙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취하할 수 있다.

제24조(담보권 실행) ①담보권의 실행은 영업부서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된 경우
2. 경매절차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등 영업부서장이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영업부서장은 회수실익가액이 없는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유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담보권 실행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담보권 이전) ①영업부서장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보증채권자의 담보권에 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의 협력을 얻어 그 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담보권이 저당권인 경우에는 그 저당권에 부기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6조(경매참가) ①영업부서장은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4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대상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

②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상품성이 희박하여 처분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우선채권액이 과다하여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경매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매가 여러 회차 진행되어 최저매각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처분가능성 및

회수실익가액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경매참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강제집행) ①영업부서장은 담보권실행으로도 채권의 완전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채무관계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강제집행은 지급명령 또는 청구소송 등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즉시 압류 등 법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저당권등 선순위채권 유무
2. 압류금지재산 여부
3. 채권회수가능재산 유무

③제1항에 따른 강제집행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재산명시신청 등) ①영업부서장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신용정보회사에 법원채무불이행정보 등록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영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목록에 대하여 채무관계자의 재산소유 여부를 조사하고, 소유재산의 회수실익가액을 검토하여 채권보전조치, 집행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 법원채무불이행정보 등록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채권회수

제29조(채권회수 원칙) 채무관계자로부터 회수하는 모든 채권은 일시에 전액을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경우
2. 회생법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제30조(제3자의 변제) 영업부서장은 채무관계자 외의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31조(대물변제) 영업부서장은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채무관계자의 대물변제를 허용할 수 있다.

제32조(회수채권의 충당순서) ①회수한 채권은 다음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

1. 비용
2. 원금
3. 이자
4. 지연배상금

②특수채권의 회수금액은 상각 후 지출한 비용, 소송대지급금, 융자금, 구상채권, 융자금 이자 및 지연배상금, 보증료, 구상채권의 지연배상금 순으로 충당한다.

③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등 그 밖의 충당순서는 세칙으로 정한다.

④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이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충당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충당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3조(채무상환 관리) ①영업부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한 후 변제를 최고하거나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업부서장은 채무관계자의 주소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전산에 등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회수한 채권은 정당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지연배상금) ①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한 채무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지연배상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2019.11.22>

1. '99. 9. 14이전 : 연 16.0%
2. '99. 9. 15부터 '13. 12. 31까지 : 연 14.0%
3. '14. 1. 1이후 : 연 9.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11.22.>

- 1.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계약상의 이율<신설 2019.11.22.>

2.회생계획인가업체의 경우에는 확정된 회생계획상의 이율<신설 2019.11.22.>

3.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채무관계자인 경우에는 연 5%<신설 2019.11.22.>

제35조(담보의 해지) 영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채권전액을 회수한 경우
2. 해당 담보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회수실익가액 이상을 회수한 경우
3. 회수실익가액이 해당 담보물 가액 이상인 대체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4. 회생계획인가업체의 사업부지(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부지에 한한다)로서 채권관리상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6조(채권추심 위임) ①영업부서장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기별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이하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조치물건, 담보물건, 환급이행사업장, 미분양주택 등을 포함하여 위임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 위임 대상채권, 관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분할상환) ①영업부서장은 채무관계자가 채무 전액을 일시에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허용기간 내에서 분할상환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관계자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할상환허용기간, 분할상환약정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자기주식의 취득) ①영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인 주주가 부도, 폐업신고 등으로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2. 주채무자인 주주에 대한 융자금 및 구상채권의 각각의 채무관계자로부터 이미 확보한 담보물건 및 채권보전조치한 물건과 재산조사로 인해 발견된 모든 자산의 회수실익가액(주주의 주식을 제외한다)의 합이 주주의 채무에 미달하는 경우<개정 2017.11.27.>

②제1항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요건, 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 (비공개 규정)

제40조(채권행사유예의 취소)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영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예를 취소하고 채권행사를 하여야 한다.

1. 신용상태가 유예시점보다 현저하게 악화될 경우
2. 유예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분할상환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그 밖에 채권보전의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

제41조 (비공개 규정)

제42조(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①공사는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약 가입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채권회수 장려금 지급) 채권회수실적이 우수한 영업부서 및 직원에게 채권회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소멸시효

제44조(소멸시효의 중단) ①영업부서장은 소멸시효가 도래한 때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판상 청구
2. 압류·가압류·가처분
3. 채무의 승인

②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방법,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소멸시효의 완성) ①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부서장은 소멸시효 중단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채권상각 및 채권매각

제46조(채권상각) ①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4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상각할 수 있다.
②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장의 승인으로 상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상각의 요건, 방법, 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7조(채권매각) ①채권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
2. 제1호의 채권에 부대되는 소송대지급금, 이자, 보증료, 지연배상금 등
②제1항에 따른 채권매각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소송

제48조 <삭제 2020. 4.24>

제49조 <삭제 2020. 4.24>

제50조 <삭제 2020. 4.24>

제51조 <삭제 2020. 4.24>

부칙<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관리업무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사규의 개정) 사규관리규정 사규분류표(별표1) 제10편 10-3 채권관리규정의 공개여부를 “부분공개”로, 제개정 사전예고 여부를 “예고”로 개정한다.

부칙<2017.11.27.>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2.>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9>

이 규정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구상채권 잔액에 대하여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사규관리규정 사규분류표(별표1)의 채권관리규정(사규번호 9-3)의 소관부서 “채권관리실, 준법지원실”을 “채권관리실”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절차가 진행 중인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 및 지침·예규를 적용한다.